

노동시간 실태분석 : 장시간 노동과 유연근무제 현황

정경은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022, 04, 21



보고서는 민주노동연구원 홈페이지(kctuli.kctu.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문의: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 주소: 04518 서울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층 전화: 02-2670-9221 팩스: 02-2670-9299 이메일: kctu-li@nodong.org

민주노동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및 이슈페이퍼는 민주노총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요약)	i
1. 개요 : 분석 목적과 내용, 자료	· 1
2. 평균 노동시간 ······	. 2
1) 주간 노동시간	2
2) OECD 연간 노동시간	3
3. 장시간 노동 실태	. 5
1)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 규모와 비율	5
2) 주 60시간 초과 노동자 규모와 비율	9
3) 노동시간 특례업종 장시간 노동실태	12
4. 유연근무제 도입 실태	14
1) 도입 현황	14
2) 향후 활용 의사	23

요약

OECD 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오명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나, 5월에 새로 취임하는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주 52시간 상한제를 훼손하는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민주노동연구원은 장시간 노동 실태와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을 분석하여 민주노총과 노동운동이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다. 통계청이 4월에 조사하는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B)와 8월에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간 노동시간은 2021년 4월에 38.8시간, 8월에 35.4시간이다. 주 52시간 상한제가 도입되기 이전인 2017년 4월 42.0시간, 8월 38.1시간에서 각각 3.2시간, 2.7시간 감소하였다. 그러나, OECD 통계국에 따르면 2020년 대한민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908시간으로 콜롬비아와 멕시코, 코스타리카에 이어서 장시간 노동 4위 국가이다. 같은 해 OECD 회원국 노동자들이 평균 1,687시간 일하는 만큼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221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노동자는 2021년 4월에 1,001천명(4.9%)이고, 8월에 1,155천명(5.5%)이다.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B) 원자료 분석결과, 2017~21년 4년간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 수는 1,446천명(-59.1%) 줄었고,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같은 기간에 1,141천명(-49.7%)이 감소하였다. 2021년 4월에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가장 많은 3대 업종은 음식점 및 주점업(132천명, 11.2%),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89천명, 16.7%), 소매업(자동차 제외)(83천명, 6.9%)이다. 2021년 현재,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는 노동자 수가 근로기준법 개정 직전 해인 2017년보다 가장 많이 감소한 업종도 음식점 및 주점업으로 175천명(-57.1%) 줄었다. 주 52시간 초과 장시간 노동 10대 업종 중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직전 해인 2017년보다 주52시간 초과자는 795천명 (-58.3%) 감소하였다(2017년 1,363천명→2021년 569천명).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으로 장시간 노동자 감소 효과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주 48시간 상한제를 도입하여 장시간

** 민주노동연구원

노동을 계속해서 줄일 필요성을 보여준다.

셋째, ILO가 과로사 기준으로 명시하는 주 60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노동자는 2021년 4월에 250천명(1.2%)이고, 8월에 2021년에 345천명(1.6%)이다.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B) 원자료 분석결과, 주 60시간 초과 노동자 수는 2017~21년 4년간 411천명(-62.2%) 줄었고,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분석결과, 398천명(-53.6%)이 감소하였다. 2021년 4월에 과로사 기준을 넘겨 일하는 노동자가 가장 많은 3대 업종은 음식점 및 주점업(35천명, 3.0%), 사업지원 서비스업(32천명, 3.5%),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27천명, 5.2%)이다. 근로기준법 개정 직전 해인 2017년보다 2021년에 주 60시간을 넘겨 일하는 노동자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3대 업종도 음식점 및 주점업(69천명, -66.5%), 소매업(자동차제외)(44천명, -73.0%), 사업지원 서비스업(35천명, -51.9%)이다. 2021년 4월, 과로사 기준을 넘겨 일하는 노동자가 가장 많은 10대 업종 중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직전 해인 2017년보다 254천명(-61.2%) 감소하였다(2017년 415천명→2021년 159천명). 주 52시간 상한제가과로사 기준을 넘겨 일하는 노동자도 줄이는 효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노동시간 특례 제외업종 중에서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 비율이 높은 3대 업종은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15.2%), 음식점 및 주점업(11.2%),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8.7%)이다. 여전히 노동시간 특례가 유지되는 5개 업종 중에서 육상운송업(16.7%)¹⁾ 과 수상운송업(8.5%)이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 비율이 높은 2대 업종이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보건업 등 노동시간 특례가 유지된 업종도 주 52시간 초과자가 감소한 만큼 업종 전체를 특례로 유지하는 장시간 노동 정책을 폐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2021년 8월 현재, 유연근무제를 활용했다는 노동자 수가 역대 최고 수준인 3,533 천명(16.8%)에 도달하였다.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인 2017년보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노동자가 2,492천명(239.4%) 늘었다. 원격근무제(1,140천명, 5.4%)와 시차출퇴근제(1,055천명, 5.0%)를 활용한 노동자가 많은 이유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969천명, 4.6%), 선택적 근로시간제(817천명, 3.9%), 근로시간단축근무제(358천명, 1.7%), 기타 유형(재량근무 등)(306천명, 1.5%)이 순서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다. 노동자가 선호하는 근로시간단축근무제와 시차출퇴근제 확산은 거론하지 않은 채, 새 정부의 대선 공약은 사용자가 선호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¹⁾ 개정 근기법(2018.3)에 따르면, 육상운송업 중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한 뒤 분석해야 하나, 산업소분류 수준에서 분석한 만큼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확대만을 포함하여 노동 현장에서 갈등이 첨예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노동자의 특성은 300인 이상 기업, 남성, 유노조 기업,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관리직과 사무전문직 중심이다. 구체적으로, 300인 이상 재직 노동자 중에서 1,186천명(42.6%), 남성 노동자 중에서 2,092천명(18.2%), 여성 노동자 중에서 1,441천명(15.2%), 정규직 중에서 2,731천명(23.0%), 비정규직 중에서 803천명(8.8%)이 포함된다. 유노조 사업체 노동자 중에서 1,901천명(32.9%), 무노조 사업체 노동자 중에서 1,632천명(10.7%)이 해당한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노동자가 밀집한 산업은 정보통신업(388천명, 45.2%), 전기가스증기업(28천명, 39.4%), 운수창고업(158천명, 17.7%), 금융보험업(260천명, 33.7%),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352천명, 33.2%) 등이다. 직업별로는 관리직(96천명, 28.6%), 전문직(1,315천명, 27.5%), 사무직(1,155천명, 25.6%)이 유연근무제를 사용하였다. 다시 말해, 전통 제조업보다 미래 산업인 IT와 금융, 전문기술 분야와 사무전문직이 유연근무제의 주요 대상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2021년 8월 현재, 앞으로도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싶지 않다는 노동자가 9,978천명(47.5%)에 이르지만, 활용하고 싶은 제도는 선택적 근로시간제(2,553천명, 12.2%), 탄력적 근로시간제(2,377천명, 11.3%), 근로시간단축근무제(1,788천명, 8.5%), 시차출퇴근제 (1,597천명, 7.6%), 재택 및 원격근무제(1,188천명, 5.7%) 순서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향후 활용 의사를 물으면서 각 제도를 간단하게 소개할 뿐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처럼 임금삭감과 노동시간 증가 가능성 인지 여부, 사용자가 단독으로 결정하더라도 활용할 의사 여부 등 민주노총과 노동운동이 추가 조사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1. 개요 : 분석 목적과 내용, 자료2)

2018년 3월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2시간 상한제가 도입되었으나, 재계와 5월에 출범하는 새 정부는 노동시간 유연화를 통해 임금 상승을 억제하려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재계 요구를 수용하여 '특별연장근로 인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6개월로 연장',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3개월까지 확대'등 일련의 유연화 조치를 시행하였다. 윤석열당선인은 한발 더 나아가 대통령 후보 시절에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핵심적인 노동공약으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현행 1~3개월에서 1년 이내로확대, 연 단위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전일제·시간제 근로 전환 신청권 부여, 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특별연장근로 대상에 스타트업 포함, 전문직 직무·고액연봉 근로자에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등을 포함한다. 민주노동연구원은 장시간 노동 실태와 유연근무제 도입현황 분석결과를 제출하여 민주노총과 노동운동이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추진할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을 기대한다.

분석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평균 노동시간은 주간 노동시간과 OECD 회원국 2020년 연간 노동시간 현황이다. 둘째, 장시간 노동 실태는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 규모와 비율, 과로사 기준인 주 60시간 초과 노동자 규모와 비율, 노동시간 특례 제외/유지 업종의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 규모와 비율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연근무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주에 직장(일)에서 유연근무제를 활용했다"고 응답한 노동자의 특성을 사업체 규모, 성별, 고용형태, 노조 유무, 산업, 직업별로 분석하였다. 이어서, 유연근무제 유형별 활용 현황과 향후 활용 의사를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는 통계청이 매년 4월 조사하는 지역별 고용조사(B) 원자료와 8월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이다. 지역별 고용조사(B) 원자료는 산업 중분류와 소분류 수준으로 노동시간을 분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는 유연근무제 현황을 분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이다.

²⁾ 이 보고서에서 노동을 '근로'로, 노동자를 '근로자'로 표현한 경우는 법률적 용어이거나 인용문이다. 이 보고서 작성에 도움을 주신 김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송주현 건설산업연맹 정책실장, 오기형 금속노조 조사통계부장, 정하나 서비스연맹 정책국장, 주미순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께 감사드린다.

2. 평균 노동시간

1) 주간 노동시간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와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주간 노동시간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해마다 4월 조사하는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의 주간 노동시간은 2014년 43.5시간에서 2017년 42.0시간으로 감소한 뒤 2018년에 41.3시간, 2019년에 40.0시간, 2021년에 38.8시간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³⁾. 해마다 8월에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는 광복절이 포함된 주라는 점에서 주간 노동시간이 지역별 고용조사 분석결과보다 짧은 편이다. 2014년 38.1시간에서 2015년 39.1시간으로 늘었으나 2016~17년 38.1시간, 2018년 36.6시간, 2019년 35.9시간까지 하락하였다가 2020년에 37.1시간으로 상승하였으나 2021년 8월에 35.4시간으로 줄었다.



[그림 1] 2014~21년 전체 노동자 주간 노동시간 추이(단위 : 시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B) 원자료 각 연도.

^{3) 2016}년과 2020년에는 조사대상 기간에 총선거일이 포함되었고, 2020년 4월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노동시간이 더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다.

〈표 1〉 2014~21년 전체 노동자 주간 노동시간 추이(단위: 시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지역별 고용조사(4월)	43.5	42.8	41.5	42.0	41.3	40.0	37.2	38.8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8월)	38.1	39.1	38.1	38.1	36.6	35.9	37.1	35.4

주 : 부업 노동시간을 포함한 총노동시간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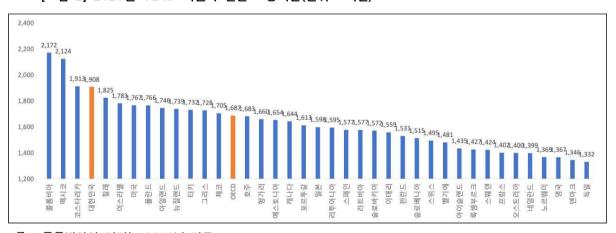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각 연도.

2) OECD 연간 노동시간

OECD에 따르면, 2020년 대한민국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1,908시간으로 2018년 이후 2000시간대 아래로 내려왔으나 콜롬비아와 멕시코, 코스타리카에 이어서 장시간 노동 4위 국가이다.

반면,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는 독일(1,332시간)이고, 다음으로 덴마크(1,346시간), 영국(1,367시간), 노르웨이(1,369시간), 네덜란드(1,399시간), 오스트리아(1,400시간), 프랑스(1,402시간), 스웨덴(1,424시간), 룩셈부르크(1,427시간), 아이슬랜드(1,435시간)까지 10대 노동시간 선진국에 포함된다.

[그림 2] 2020년 OECD 회원국 연간 노동시간(단위: 시간)



주 : 콜롬비아와 터키는 2019년 자료.

자료: OECD.Stat, 2022년 3월 37일 추출.

2008년에 대한민국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228시간으로 OECD 평균 노동시간 (1,769시간)보다 459시간 더 길게 일했다. 이후 해마다 연간 노동시간이 감소하여 2018년에 1,993시간으로 줄면서 OECD 평균 노동시간(1,753시간)보다 240시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OECD 회원국 노동자들이 평균적으로 1,687시간 일하는 만큼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1,908시간 일함으로써 이들보다 221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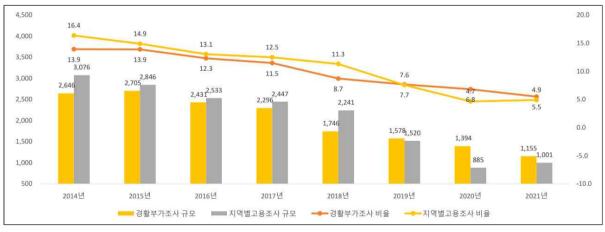
[그림 3] 2008~20년 대한민국과 OECD 평균 노동시간(단위 : 시간)

자료 : OECD.Stat, 2022년 3월 37일 추출.

3. 장시간 노동 실태

1)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 규모와 비율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노동자 수는 2021년 4월에 1,001천명(4.9%)이고, 8월 기준으로 할 때, 2021년에 1,155천명(5.5%)이다.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B) 원자료 분석결과, 2014~21년 7년간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 수는 2,076천명(-67.5%) 줄었고, 2017년 2,447천 명에서 4년간 1,446천명(-59.1%) 줄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분석결과, 2014~21년 7년간 1,491천명(-56.3%)이 감소하였고, 2017년 2,296천명에서 1141 천명(-49.7%) 줄었다. 그나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 상한제가 도입된 직후인 2019년부터 두 조사 모두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던 노동자가 150만명 이하로 감소하였다.



[그림 4] 2014~21년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 규모와 비율(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B) 원자료 각 연도.

〈표 2〉 2014~21년 노동시간 계층별 노동자 규모와 비율, 증감률(단위 : 천명, %)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5시간 미만	1,423	1,430	1,370	1,391	1,511	1,852	1,891	1,851
	15~36시간 미만	6,503	5,153	6,289	6,126	7,235	7,188	3,618	7,544
	36~40시간	4,267	5,194	5,129	5,340	5,428	5,883	8,751	6,369
규	41~44시간	1,064	1,218	1,103	1,224	996	896	1,181	1,007
모	45~48시간	1,939	2,431	2,124	2,343	2,031	1,972	2,392	1,959
	49~52시간	1,149	1,343	1,296	1,286	1,098	1,190	1,220	1,107
	52시간 초과	2,646	2,705	2,431	2,296	1,746	1,578	1,394	1,155
	(60시간 초과)	(988)	(964)	(836)	(743)	(538)	(492)	(398)	(345)
	15시간 미만	7.5	7.3	6.9	7.0	7.5	9.0	9.3	8.8
	15~36시간 미만	34.2	26.5	31.9	30.6	36.1	35.0	17.7	35.9
	36~40시간	22.5	26.7	26.0	26.7	27.1	28.6	42.8	30.3
비	41~44시간	5.6	6.3	5.6	6.1	5.0	4.4	5.8	4.8
중	45~48시간	10.2	12.5	10.8	11.7	10.1	9.6	11.7	9.3
	49~52시간	6.0	6.9	6.6	6.4	5.5	5.8	6.0	5.3
	52시간 초과	13.9	13.9	12.3	11.5	8.7	7.7	6.8	5.5
	(60시간 초과)	(5.2)	(5.0)	(4.2)	(3.7)	(2.7)	(2.4)	(1.9)	(1.6)
	15시간 미만	4.6	0.5	-4.2	1.5	8.6	22.5	2.1	-2.1
	15~36시간 미만	8.3	-20.8	22.1	-2.6	18.1	-0.6	-49.7	108.5
z	36~40시간	-4.0	21.7	-1.3	4.1	1.7	8.4	48.8	-27.2
증 가	41~44시간	6.1	14.5	-9.4	10.9	-18.6	-10.0	31.8	-14.7
감 률	45~48시간	3.2	25.4	-12.6	10.3	-13.3	-2.9	21.3	-18.1
2	49~52시간	8.6	16.9	-3.5	-0.8	-14.6	8.4	2.5	-9.3
	52시간 초과	-0.3	2.2	-10.1	-5.6	-24.0	-9.6	-11.7	-17.1
	(60시간 초과)	(0.7)	(-2.4)	(-13.3)	(-11.1)	(-27.7)	(-8.4)	(-19.1)	(-13.4)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B) 원자료 분석결과, 2021년 4월에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가장 많은 업종은 음식점 및 주점업이며 132천명(11.2%)이 해당한다. 이밖에도 장시간 노동 10대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에서 89천명(16.7%), 소매업:자동차 제외에서 83천명(6.9%), 사업지원 서비스업에서 69천명(7.6%), 전문직별 공사업에서 52천명(5.7%), 종합 건설업에서 40천명(5.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서 38천명(3.4%), 도매 및 상품 중개업에서 34천명(4.2%), 부동산업에서 34천명(9.2%), 보건업에

서 29천명(2.9%)이다.



[그림 5] 2021년 주 52시간 초과 20대 장시간 노동 업종(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B) 원자료(2021년 상반기).

2021년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는 노동자 수가 근로기준법 개정 직전 해인 2017년보다 가장 많이 감소한 업종도 음식점 및 주점업으로 175천명(-57.1%) 줄었다. 다음으로, 소매업 (자동차 제외)에서 142천명(-63.2%), 사업지원 서비스업에서 76천명(-52.3%)까지 3순위 안에 서비스업이 포진하였다. 종합 건설업에서 70천명(-63.8%)과 전문직별 공사업에서 64천명 (-55.1%) 등 장시간 노동으로 악명높은 건설업과 대한민국의 양대 제조업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에서 68천명(-76.9%)과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에서 40천명(-66.3%)이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벗어났다. 이밖에도 주 52시간 초과자 감소 인원 수기준으로 7위인 도매 및 상품 중개업에서 62천명(-64.7%), 8위인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으로 58천명(-39.4%)이 줄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서 제외되어 주 52시간 특례업종이유지되는 보건업도 40천명(-58.0%)이 감소하여 10위 안에 포함된다. 5년 사이에 주 52시간

초과자가 많이 감소한 10대 업종 중에서 감소율이 가장 큰 2대 업종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76.9%)과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66.3%)이다.



[그림 6] 2017~21년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 감소 10대 업종(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B) 원자료(2021년 상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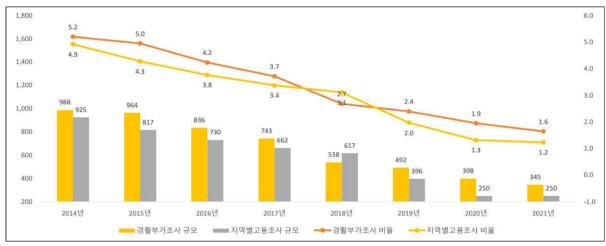
〈표 3〉 2017~21년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 감소 10대 업종(단위 : 천명, %)

	201	2017년		1년	2017	-21년
	규모	비율	규모	비율	규모	비율
음식점 및 주점업	307	24.1	132	11.2	-175	-57.1
소매업(자동차 제외)	225	17.0	83	6.9	-142	-63.2
사업지원 서비스업	145	14.5	69	7.6	-76	-52.3
종합 건설업	110	14.6	40	5.3	-70	-63.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8	18.2	20	4.8	-68	-76.9
전문직별 공사업	116	15.0	52	5.7	-64	-55.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96	11.2	34	4.2	-62	-64.7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47	30.4	89	16.7	-58	-39.4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61	13.1	21	4.6	-40	-66.3
보건업	68	7.7	29	2.9	-40	-58.0

자료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B) 원자료(2017년 상반기, 2021년 상반기).

2) 주 60시간 초과 노동자 규모와 비율

ILO가 과로사 기준으로 제시하는 주 60시간을 넘겨 일하는 노동자 수는 2021년 4월에 250천명(1.2%)이고, 8월에 2021년에 345천명(1.6%)이다.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B) 원자료 분석결과, 주 60시간 초과 노동자 수는 2014~21년 7년간 675천명(-72.9%) 줄었고, 2017년 662천명에서 4년간 411천명(-62.2%) 감소하였다. 근기법 개정 이전 해인 2017년보다 4월에 662천명에서 411천명(-62.2%), 8월에 743천명에서 398천명(-53.6%) 줄었다. 그나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 상한제가 도입된 직후인 2019년부터 주 60시간 초과 노동자 수가 50만명 아래로 내려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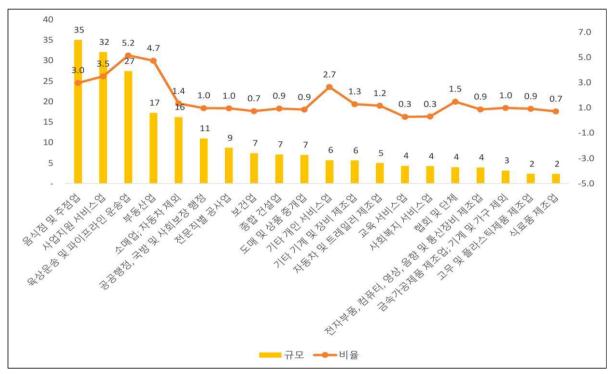


[그림 7] 2014~21년 주 60시간 초과 노동자 규모와 비율(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B) 원자료 각 연도.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B) 원자료 분석결과, 2021년 4월에 과로사 기준을 넘겨 일하는 노동자가 가장 많은 업종 노동자는 음식점 및 주점업에서 일하는 35천명(3.0%)이다. 다음으로, 사업지원 서비스업에서 32천명(3.5%),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에서 27천명(5.2%), 부동산업에서 17천명(4.7%), 소매업(자동차 제외)에서 16천명(1.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서 11천명(1.0%), 전문직별 공사업에서 9천명(1.0%), 보건업에서 7천명(0.7%), 종합 건설업에서 7천명(0.9%), 도매 및 상품 중개업에서 7천명(0.9%)이 주 60시간

을 넘겨 일하는 노동자가 많은 10대 업종에서 일한다.



[그림 8] 2021년 주 60시간 초과 20대 장시간 노동 업종(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B) 원자료(2021년 상반기).

2021년에 과로사 기준인 주 60시간을 넘겨 일하는 노동자 수가 근로기준법 개정 직전 해인 2017년보다 가장 많이 감소한 업종도 음식점 및 주점업으로 69천명(-66.5%) 줄었다. 다음으로, 소매업(자동차 제외)에서 44천명(-73.0%), 사업지원 서비스업에서 35천명(-51.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에서 19천명(-41.2%), 도매 및 상품 중개업에서 16천명(-69.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에서 16천명(-76.0%), 종합 건설업에서 15천명(-67.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에서 14천명(-78.2%), 전문직별 공사업에서 14천명(-61.3%), 부동산업에서 12천명(-41.3%)이 감소하면서 주 60시간 초과노동자가 감소한 10대 업종에 포함된다.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육상운송 및 자동차 및 음향 및 음식점 및 소매업; 자동차 사업지원 파이프라인 도매 및 상품 트레일러 통신장비 전문직별 주점업 제외 서비스업 운송업 제조업 종합 건설업 부동산업 중개업 제조업 공사업 0.0 -100 -10 -12 -20.0 -20 -19 -30.0 -40.0 -35 -40 -41.2 -41.3 -50.0 -44 -50 -51.9 -60.0 -61.3 -70.0 -73.0 -80.0 -76.0 -69 -78.2 -80 -90.0

[그림 9] 2017~21년 주 60시간 초과 노동자 감소 10대 업종(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B) 원자료(2021년 상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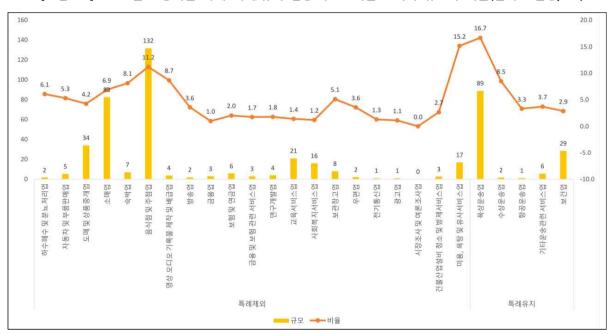
〈표 4〉 2017-21년 주 60시간 초과 노동자 증감 추이(단위 : 천명, %, %)

	2017년		202	:1년	2017-21년	
	규모	비율	규모	비율	규모	비율
음식점 및 주점업	105	8.2	35	3.0	-69	-66.5
소매업(자동차 제외)	60	4.6	16	1.4	-44	-73.0
사업지원 서비스업	67	6.7	32	3.5	-35	-51.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47	9.7	27	5.2	-19	-41.2
도매 및 상품 중개업	23	2.7	7	.9	-16	-69.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1	4.3	5	1.2	-16	-76.0
종합 건설업	22	2.9	7	.9	-15	-67.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8	3.9	4	.9	-14	-78.2
전문직별 공사업	23	2.9	9	1.0	-14	-61.3
부동산업	29	8.4	17	4.7	-12	-41.3

자료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B) 원자료 상반기 각 연도.

3) 노동시간 특례업종 장시간 노동 실태

2021년 상반기, 노동시간 특례 제외업종 중에서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 비율이 높은 3대 업종은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15.2%), 음식점 및 주점업(11.2%),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8.7%)이다. 여전히 노동시간 특례가 유지되는 5개 업종 중에서 육상운송업 (16.7%)⁴⁾과 수상운송업(8.5%)이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 비율이 높은 2대 업종이다.



[그림 10] 2021년 노동시간 특례 제외/유지 업종 주 52시간 초과자 규모와 비율(단위 : 천명, %)

주 : 개정 근기법(2018.3)에 따르면, 육상운송업 중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한 뒤 분석해야 하나, 산업소분류 자료가 없어 반영하지 못하였다.

자료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B) 원자료 2021년 상반기.

2017년 이후, 노동시간 특례가 폐지된 업종과 유지 업종 모두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음식점 및 주점업에서 175천명(-12.9%), 소매업에서 142천명(-10.1%), 육상운송업도 58천명(-13.7%), 보건업도 40천명(-4.8%)이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났다.

⁴⁾ 개정 근기법(2018.3)에 따르면, 육상운송업 중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한 뒤 분석해야 하나, 산업소분류 수준에서 분석한 만큼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표 5〉 2017~21년 노동시간 특례업종 주 52시간 초과자 규모와 비율, 증감(단위: 천명, %, %p)

	업종	201	7년	201	8년	201	9년	202	10년	202	21년	2017	~21년
	<u>16</u>	西	%	명	%	명	%	во	%	명	%	명	%р
특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2	8.1	1	7.3	1	4.3	0	1.7	2	6.1	-0	-2.0
례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17	15.0	12	10.8	10	9.1	6	5.8	5	5.3	-11	-9.6
제	도매 및 상품중개업	96	11.2	92	10.5	62	7.1	36	4.2	34	4.2	-62	-7.0
외	소매업	225	17.0	196	14.9	131	10.1	84	7.0	83	6.9	-142	-10.1
업	숙박업	19	18.8	14	15.3	11	11.3	4	5.6	7	8.1	-12	-10.7
종	음식점 및 주점업	307	24.1	301	23.8	230	17.7	130	11.9	132	11.2	-175	-12.9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5	10.8	6	9.7	3	5.1	2	3.2	4	8.7	-1	-2.1
	방송업	6	11.1	4	8.2	2	4.9	2	3.2	2	3.6	-4	-7.5
	금융업	17	5.3	18	5.4	8	2.6	3	.9	3	1.0	-14	-4.3
	보험 및 연금업	16	5.7	15	5.1	6	2.2	6	2.2	6	2.0	-10	-3.7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7	5.9	9	5.3	7	3.8	2	1.5	3	1.7	-4	-4.2
	연구개발업	12	6.6	9	4.8	7	4.0	4	1.8	4	1.8	-8	-4.8
	교육서비스업	50	3.2	39	2.6	37	2.4	12	.9	21	1.4	-29	-1.8
	사회복지서비스업	33	3.6	25	2.6	18	1.6	13	1.4	16	1.2	-17	-2.5
	보관창고업	13	12.8	18	16.1	10	7.4	8	6.1	8	5.1	-5	-7.7
	우편업	7	13.0	7	11.9	4	7.4	2	3.4	2	3.6	-5	-9.5
	전기통신업	6	7.3	4	5.8	2	2.5	1	.7	1	1.3	-5	-6.0
	광고업	4	5.9	4	7.2	3	3.9	2	3.2	1	1.1	-4	-4.8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0	2.9	1	9.0	0	3.7	0	3.7	0	0.0	-0	-2.9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5	5.7	5	5.3	2	2.3	2	2.8	3	2.7	-2	-3.0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42	32.6	44	33.9	34	24.8	16	13.5	17	15.2	-25	-17.4
특	육상운송업	147	30.4	149	31.1	111	22.8	67	14.3	89	16.7	-58	-13.7
례	수상운송업	3	12.8	3	14.2	4	18.2	2	9.3	2	8.5	-1	-4.3
유	항공운송업	3	7.2	2	6.4	1	3.1	0	.7	1	3.3	-1	-3.9
지	기타운송관련 서비스업	12	10.0	13	9.6	7	5.2	4	2.8	6	3.7	-7	-6.3
	보건업	68	7.7	56	6.0	41	4.3	32	3.4	29	2.9	-40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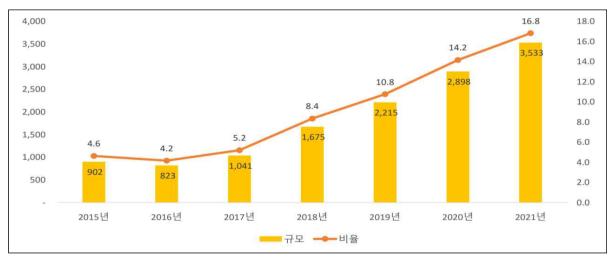
주 : 개정 근기법(2018.3)에 따르면, 육상운송업 중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한 뒤 분석 해야 하나, 산업소분류 수준 자료가 없어 반영하지 못하였다.

자료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B) 원자료 상반기 각 연도.

4. 유연근무제 도입 실태

1) 도입 현황

2021년 8월 현재, 전체 노동자 20,992천명 중에서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노동자가 역대 최고 수준인 3,533천명(16.8%)에 도달하였다. 2015년 902천명보다 2,631천명(291.6%) 늘어나 3배에 육박할 만큼 확대됐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했다는 노동자가 2017년 1,041천명 (5.2%)으로 100만명을 넘어선 뒤 2019년에 2,215천명(10.8%)으로 증가했고 20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898천~3,533천명(14.2~16.8%)으로 상승하였다.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인 2017년보다 직장에서 유연근무제를 활용했다는 노동자가 2,492천명(239.4%) 늘었다.



[그림 11] 2015~21년 유연근무제 활용 규모와 비율(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2021년 8월, "지난 주 직장(일)에서 활용한 유연근무제" 유형을 분석한 결과, 재택 및 원격근무제가 1,140천명(5.4%), 시차출퇴근제가 1,055천명(5.0%),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969천명(4.6%)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했다고 응답한 인원은 817천명(3.9%), 근로시간단축근무제는 358천명(1.7%), 기타 유형(재량근무 등)은 306천명(1.5%)이다.

노동자가 추구하는 노동시간 유연화 제도로, 근로시간 단축근무제는 전일제 노동자가 일

정 기간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일하는 근무형태이고, 시차 출퇴근제는 개인별로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이다.

사용자가 선호하는 노동시간 유연화 제도는 주당 소정노동시간 범위 내에서 1일 노동시간을 늘리거나 줄이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업무량 증감에 따라 노동시간을 늘리거나 줄이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대표적이다. 재량근무는 소정 노동시간과 관계없이 개별 노동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정하는 경우이다.

한편, 재택 및 원격 근무제는 일하는 장소가 사무실이 아닌 자택 등에서 모바일 기기를 갖추고 일하는 근무 형태이며, 코로나19 이후 대거 확산되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될 경우에도 유지될지 불투명하다.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인 2017년과 2021년 현황을 비교할 때, 재택 및 원격근무제를 사용했다는 노동자가 1,081천명(1,837.9%) 늘었고,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699천명(258.4%), 시차출퇴근제가 655천명(163.7%),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485천명(146.0%), 근로시간단축근무제가 255천명(247.9%), 기타 유형(재량근무 등)이 211천명(222.9%) 늘어났다(〈부표〉참조).



[그림 12] 2015~21년 유연근무제 유형별 활용 규모와 비율(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6〉 2015~21년 유형별 유연근무제 활용 규모와 비율(단위: 천명, %)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체	규모	902	823	1,041	1,675	2,215	2,898	3,533
비율	-	4.6	4.2	5.2	8.4	10.8	14.2	16.8
	근로시간단축근무제	4	65	103	252	378	379	358
	시차출퇴근제	379	314	400	556	746	905	1,055
규	선택적 근로시간제	300	260	332	541	674	766	817
모	재택 및 원격근무제	66	60	59	79	95	503	1,140
	탄력적 근로시간제	238	195	270	458	710	844	969
	기타 유형(재량근무등)	111	13	95	183	213	297	306
	근로시간단축근무제	0.0	0.3	0.5	1.3	1.8	1.9	1.7
	시차출퇴근제	1.9	1.6	2.0	2.8	3.6	4.4	5.0
비	선택적 근로시간제	1.5	1.3	1.7	2.7	3.3	3.7	3.9
율	재택 및 원격근무제	0.3	0.3	0.3	0.4	0.5	2.5	5.4
	탄력적 근로시간제	1.2	1.0	1.4	2.3	3.5	4.1	4.6
	기타 유형(재량근무등)	0.6	0.1	0.5	0.9	1.0	1.5	1.5

주 : 유연근무제 유형별 도입 현황은 복수 응답을 포함한 것으로 유형별 도입 인원의 합계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한다고 응답한 전체 인원 규모와 일치하지 않는다.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사업체 규모별로 볼 때, 2021년 8월 현재,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노동자는 300인 이상 재직 노동자 중에서 1,186천명(42.6%), 100~299인 사업체 노동자 중에서 566천명(28.4%), 30~99인 사업체 노동자 중에서 898천명(22.6%), 10~29인 사업체 노동자 중에서 728천명(15.2%), 5~9인 사업체 노동자 중에서 95천명(2.6%), 1~4인 사업체 노동자 중에서 60천명(1.6%)이다.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인 2017년보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노동자가 300명 이상 사업체에서 831천명(234.2%), 100~299명 사업체에서 385천명(211.8%), 30~99명 사업체에서 660천명(276.4%), 10~29명 사업체에서 486천명(201.5%), 5~9명 사업체에서 79천명(514.2%), 1~4명 사업체에서 51천명(557.1%) 늘어났다(〈부표〉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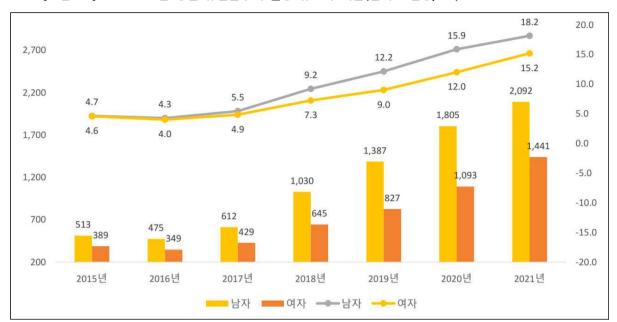


[그림 13] 2015~21년 사업체 규모별 유연근무제 활용 규모와 비율(단위 : 천명, %)

〈표 7〉 2015~21년 사업체 규모별 유연근무제 활용 규모와 비율(단위 : 천명, %)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체	규모	902	823	1,041	1,675	2,215	2,898	3,533
비율	-	4.6	4.2	5.2	8.4	10.8	14.2	16.8
	1~4명	15	8	9	29	51	42	60
	5~9명	33	12	15	41	60	76	95
규	10~29명	205	179	241	322	441	609	728
모	30~99명	188	170	239	376	499	728	898
	100~299명	155	151	182	263	372	446	566
	300명 이상	307	304	355	643	791	996	1,186
	1~4명	0.4	0.2	0.3	.8	1.4	1.2	1.6
	5~9명	0.9	0.3	0.4	1.2	1.7	2.2	2.6
비	10~29명	4.7	4.0	5.3	7.0	9.6	13.2	15.2
율	30~99명	5.0	4.5	6.2	9.7	12.8	18.2	22.6
	100~299명	8.2	7.6	9.0	13.4	18.7	22.6	28.4
	300명 이상	12.8	12.4	14.4	25.4	29.7	36.9	4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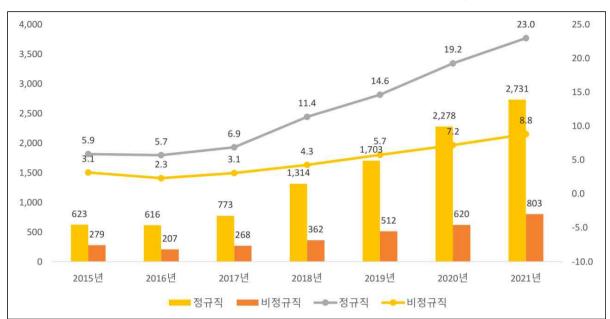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14] 2015~21년 성별 유연근무제 활용 규모와 비율(단위 :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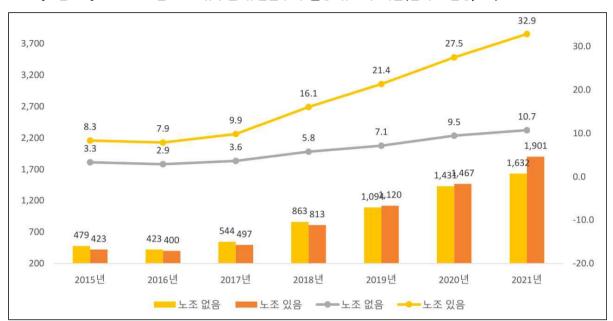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노동자는 남성 노동자 중에서 2,092천명(18.2%), 여성 노동자 중에서 1,441천명(15.2%)이다. 남녀 모두 2018년부터 증가 추이를 보이며, 2017년보다 남성이 1,480명(241.9%), 여성이 1,012명(235.8%) 늘어났다(〈부표〉 참조).

유연근무제를 사용한 노동자는 정규직 중에서 2,731천명(23.0%), 비정규직 중에서 803천명(8.8%)이다.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인 2017년보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정규직이 1,958천명(253.2%) 늘었으나 비정규직은 535천명(199.6%) 증가했다(〈부표〉 참조).



[그림 15] 2015~21년 고용형태별 유연근무제 활용 규모와 비율(단위 : 천명, %)

유연근무제를 사용한 노동자는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체 노동자 중에서 1,901천명(32.9%), 무노조 사업체 노동자 중에서 1,632천명(10.7%)이다.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인 2017년보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했다고 응답한 노동자가 유노조 사업체 소속이 1,404천명(282.7%) 늘었으 나 무노조 사업체 소속은 1,088천명(199.9%) 증가했다(〈부표〉참조).



[그림 16] 2015~21년 노조 유무별 유연근무제 활용 규모와 비율(단위 : 천명, %)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노동자가 가장 많은 산업은 정보통신업으로 388천명(45.2%)이며, 전기가스증기업 노동자 중에서 28천명(39.4%), 운수창고업 노동자 중에서 158천명(17.7%), 금융보험업 노동자 중에서 260천명(33.7%),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노동자 중에서 352천명 (33.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노동자 중에서 340천명(28.8%), 교육서비스업 노 동자 중에서 342천명(22.0%)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인 2017년과 비교하면, 제조업이 489천명(267.7%) 늘어났고, 정보 통신업이 307천명(379.4%), 교육서비스업이 253천명(284.1%),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 253천명(254.9%), 도소매업이 181천명(231.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이 154천명(82.7%), 보건복지업이 152천명(210.9%) 늘어났다(〈부표〉참조).



[그림 17] 2021년 산업별 유연근무제 활용 규모와 비율(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2021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A) 원자료.

산업별로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을 간단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업은 재택 및 원격근무제(24.8%)를 활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고, 시차출퇴근제(12.5%), 탄력적 근로시간 제(11.4%), 선택적 근로시간제(10.9%) 순서로 활용하고 있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재택 및 원격근무제(14.1%)와 시차출퇴근제(10.7%) 활용 비율이 높다. 전기가스증기업은 시차출퇴근제(20.1%)와 재택 및 원격근무제(1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은 시차출퇴근제(17.8%), 교육서비스업은 재택 및 원격근무제(10.1%)를, 금융보험업도 재택 및 원격근무제(15.7%)를 활용하고 있다. 노동시간단축근무제를 활용한다는 비율은 국제 및 외국기관(12.9%)이 다른 산업보다 높게 나왔다.

〈표 8〉 2021년 산업별 유연근무제 활용 노동자 비율(단위 : %)

	도입	미도입	근로시간단 축근무제	시차출퇴 근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택 및 원격근무	탄력적 근로시간 제	기타(재량 근무등)
전 산업	16.8	83.2	1.7	5.0	3.9	5.4	4.6	1.5
농림어업	1.0	99.0	0.0	0.4	0.0	1.0	0.0	0.2
광업	3.4	96.6	0.0	0.0	0.0	0.0	0.0	3.4
제조업	17.4	82.6	2.4	3.8	5.1	3.0	6.1	1.3
전기가스증기공기	39.4	60.6	3.0	20.1	8.5	18.4	8.6	1.0
수도하수폐기물처리	14.7	85.3	0.4	5.4	2.0	4.3	4.2	2.9
건설업	7.4	92.6	0.7	1.8	1.5	1.7	2.6	0.8
도매소매업	12.3	87.7	1.5	3.4	2.5	4.0	3.4	1.2
운수창고업	17.7	82.3	2.1	5.0	3.4	3.5	6.9	2.0
숙박 음 식점업	5.3	94.7	0.8	1.2	2.8	0.3	1.7	0.5
정보 통 신업	45.2	54.8	2.5	12.5	10.9	24.8	11.4	3.3
금융보험업	33.7	66.3	4.0	9.4	6.1	15.7	7.2	4.8
부동산업	7.8	92.2	1.0	0.7	1.7	2.2	3.5	1.5
전문과학기술	33.2	66.8	2.7	10.7	8.0	14.1	9.7	1.3
사업시설관리	11.0	89.0	1.7	3.3	2.6	3.6	2.7	8.0
공공행정	28.8	71.2	2.2	17.8	6.3	9.6	3.7	0.9
교육서비스업	22.0	78.0	2.1	5.0	3.1	10.1	4.2	2.3
보건사회복지	8.7	91.3	0.6	2.3	2.2	0.9	2.9	1.2
예술스포츠여가관련	16.3	83.7	0.9	4.9	4.0	2.1	6.3	2.0
협회단체수리기타	9.0	91.0	0.5	3.0	1.8	1.9	2.1	0.9
가구내 고용활동 등	1.3	98.7	0.0	1.3	0.0	0.0	0.0	0.0
국제 및 외국기관	18.1	81.9	12.9	0.0	0.0	5.2	0.0	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2021년 8월).

유연근무제를 사용한 노동자의 직업을 살펴본 결과, 관리직 중에서 96천명(28.6%), 전문 직 중에서 1,315천명(27.5%), 사무직 중에서 1,155천명(25.6%), 서비스직 중에서 203천명 (9.5%), 판매직 중에서 202천명(13.1%), 기능직 중에서 155천명(8.5%), 기계조작조립직 중에서 225천명(10.7%), 단순노무직 중에서 177천명(4.8%), 농림어업 숙련직 중에서 5천명 (7.6%)이다.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인 2017년과 비교하면,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노동자가 관리직에서 70천명(273.1%), 전문직에서 910천명(224.7%), 사무직에서 809천명(234.2%) 늘어났다. 서비스직이 133천명(189.8%), 판매직이 132천명(186.9%), 기능직이 128천명(461.6%), 기계조작조립직이 171천명(317.6%), 단순노무직이 137천명(341.9%), 농림어업숙련직도 3천명 (88.3%) 늘어났다(〈부표〉참조).



[그림 18] 2021년 직업별 유연근무제 활용 규모와 비율(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2) 향후 활용 의사

2021년 8월 현재, 앞으로도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노동자가 9,978 천명(47.5%)에 이르며, 향후 활용하고 싶은 제도는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2,553천명(12.2%),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2,377천명(11.3%), 근로시간단축근무제가 1,788천명(8.5%), 시차출퇴근 제가 1,597천명(7.6%), 재택 및 원격근무제가 1,188천명(5.7%) 순서로 나타났다.

2015~21년 7년간 시차출퇴근제(10.2→7.6%)와 선택적 근로시간제(14.5→12.2%) 활용 의사가 해마다 감소하는 반면에, 근로시간단축근무제(7.5→8.5%), 재택 및 원격근무제(2.8→5.7%)와 탄력적 근로시간제(9.6→11.3%) 활용 의사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2015~21년 향후 유연근무제 유형별 활용 의사(단위: 천명, %)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근로시간단축근무제	1,457	1,642	1,952	1,738	1,724	1,676	1,788
	시차출퇴근제	1,995	2,035	1,887	1,747	1,483	1,540	1,597
_	선택적 근로시간제	2,823	3,021	2,897	2,800	2,687	2,669	2,553
규 모	재택 및 원격근무제	547	668	586	520	551	896	1,188
<u> </u>	탄력적 근로시간제	1,871	2,028	1,994	2,060	2,309	2,307	2,377
	기타 유형(재량근무등)	464	459	460	499	626	594	658
	활용하고 싶지 않음	11,724	11,494	11,662	11,399	11,295	10,364	9,978
	근로시간단축근무제	7.5	8.3	9.8	8.7	8.4	8.2	8.5
	시차출퇴근제	10.2	10.3	9.4	8.7	7.2	7.5	7.6
비	선택적 근로시간제	14.5	15.3	14.5	14.0	13.1	13.1	12.2
미 율	재택 및 원격근무제	2.8	3.4	2.9	2.6	2.7	4.4	5.7
프	탄력적 근로시간제	9.6	10.3	10.0	10.3	11.2	11.3	11.3
	기타 유형(재량근무등)	2.4	2.3	2.3	2.5	3.0	2.9	3.1
	활용하고 싶지 않음	60.2	58.2	58.3	56.9	54.9	50.7	47.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부표〉 2017~21년 유연근무제 증감 현황(단위 : 천명, %)

		201	7년	202	1년	2017	~21년
		규모	비율	규모	비율	규모	증감률
전체		1,041	100.0	3,533	100.0	2,492	239.4
	1~4명	9	0.9	60	1.6	51	557.1
	5~9명	15	1.5	95	2.6	79	514.2
사업체	10~29명	241	23.2	728	15.2	486	201.5
규모	30~99명	239	22.9	898	22.6	660	276.4
	100~299명	182	17.4	566	28.4	385	211.8
	300명 이상	355	34.1	1,186	42.6	831	234.2
성별	남자	612	58.8	2,092	18.2	1,480	241.9
02	여자	429	41.2	1,441	15.2	1,012	235.8
고용	정규직	773	74.3	2,731	23.0	1,958	253.2
형태	비정규직	268	25.7	803	8.8	535	199.6
노조	노조 없음	544	52.3	1,632	10.7	1,088	199.9
	노조 있음	497	47.7	1,901	32.9	1,404	282.7
	농림어업	-	0.0	1	1.0	1	196.5
	광업	3	0.2		3.4	-2	-83.9
	제조업	183	17.6	672	17.4	489	267.7
	전기가스증기공기	6	0.6	28	39.4	22	365.6
	수도하수폐기물처리	7	0.7	23	14.7	16	213.0
	건설업	25	2.4	128	7.4	104	417.3
	도매소매업	78	7.5	259	12.3	181	231.5
	운수창고업	24	2.3	158	17.7	134	559.4
	숙박음식점업	34	3.2	66	5.3	33	96.9
	정보 통 신업	81	7.8	388	45.2	307	379.4
산업	금융보험업	68	6.6	260	33.7	192	281.0
	부동산업	8	0.7	31	7.8	24	312.3
	전문과학기술	99	9.5	352	33.2	253	254.9
	사업시설관리	39	3.7	144	11.0	105	269.0
	공공행정	186	17.9	340	28.8	154	82.7
	교육서비스업	89	8.6	342	22.0	253	284.1
	보건사회복지	72	6.9	224	8.7	152	210.9
	예술스포츠여가관련	20	1.9	53	16.3	33	165.5
	협회단체수리기타	18	1.7	59	9.0	41	227.3
	가구내 고용활동 등	0	0.0	1	1.3	1	_
	국제 및 외국기관	1	0.1	2	18.1	1	88.9
	관리자	26	2.5	96	28.6	70	273.1
직업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405	38.9	1,315	27.5	910	224.7
	사무 종사자	345	33.2	1,155	25.6	809	234.2

	201	7년	202	1년	2017~21년	
	규모	비율	규모	비율	규모	증감률
서비스 종사자	70	6.7	203	9.5	133	189.8
판매 종사자	70	6.8	202	13.1	132	186.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	.3	5	7.6	3	88.3
기능직	28	2.7	155	8.5	128	461.6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원	54	5.2	225	10.7	171	317.6
단순노무 종사자	40	3.8	177	4.8	137	341.9